

#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및자격관리에관한시행세칙

제정	2003.	12.	23
개정	2006.	3.	28
개정	2010.	3.	1
개정	2012.	1.	1
개정	2012.	11.	1
개정	2014.	4.	1
개정	2016.	4.	1
개정	2018.	2.	7
개정	2018.	9.	1
개정	2021.	3.	1

## 1. 응시신청

### 가. 응시신청일

- 시험공고시 지정한 날

### 나. 응시자격

- 보험업법 제83조(모집할 수 있는 자)에 규정된 모집종사자 중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 보험종목의 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자
  - 생명보험회사의 임·직원의 경우 응시신청 현재 해당회사에 재직 중인 자
  - 설계사, 대리점(유자격자, 설계사)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 응시신청 현재 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

#### 다. 응시신청 및 제출서류

##### 1) 응시신청방법

- 응시희망자는 소속 생명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. 단, 대리점 (유자격자, 설계사)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 변액보험모집을 위탁한 생명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
- 생명보험회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응시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신청
- 시험일시, 시험장소 및 수험번호는 협회에서 배정하며, 생명보험회사는 전산파일로 배정결과 확인

##### 2) 제출서류

-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 : 재직증명서(규정 별지 제1호 서식)
- 협회 또는 금감원에 등록·신고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: 협회 전산명부로 같음

#### 라. 시험시행 계획서

- 시험실시일 기준 2영업일전까지 시험장소 및 수험번호 등을 회사에 통보

## 2. 시험실시

가. 시험일시 : 협회가 별도로 정함

나. 시험장소 : 서울 등 협회 지역 본·지부 소재지 및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지역

다. 시험시간 : 75분 이내

## 라. 시험장 관리

- 시험시작 10분전 입실완료
- 시험 시작 후 입장불가
- 신분증 미지참자 시험응시 불가
  - \* 신분증 : 주민등록증(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), 운전면허증, 기간 만료전의 여권, 청소년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국가기술자격증, 장애인복지카드, 기타 국가에서 신분을 확인해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
  - \*\* 사진이 심하게 손상되어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
- OMR답안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 사용
- 협회는 협회 직원을 시험감독자로 임명하고, 1인 이상의 시험관리자를 별도로 지정
- 시험감독자와 시험관리자는 응시신청서의 내용과 신분증, 수험자대조를 통해 수험자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, 답안지의 시험관리인 확인란에 서명

## 마. 시험문제의 출제

- 협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
- 출제위원은 학계, 금융감독원·협회 관련부서의 책임자급 직원 등으로 구성
- 시험문제 출제범위
  - 변액보험 교재 및 모집종사자의 직업윤리, 경제·일반상식 등
- 시험문제문항 및 형태
  - 시험문제 문항수 : 40문항
  - 문제형태 : 진위형(O,X), 사지선택형

#### 바. 시험실시 결과보고 및 서류제출

- 시험감독자는 시험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당해시험 실시결과를 해당지역 본·지부에 보고
- 각 지역 본·지부는 관할지역별 시험실시결과를 취합, 자격관리팀에 즉시 보고
- 시험감독자는 시험지, 답안지 및 응시신청서 등 시험관계서류일체를 밀봉, 날인하여 해당지역 본·지부에 제출

### 3. 부정행위 등

#### 가.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등

-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: 행위일로부터 2년간 자격제한
  - 시험대리행위자
    - ▶ 변액보험 판매자격 기취득자 : 판매자격취소 및 2년간 응시제한
    - ▶ 변액보험 판매자격 미취득자 : 2년간 응시제한
  - 응시신청자 : 2년간 응시제한
- 문제를 메모하거나 통신기기 등으로 촬영하여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 : 행위일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
-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: 행위일로부터 1년간 응시제한
- 시험 중 타인의 답을 보거나, 자신의 답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: 행위일로부터 1년간 응시제한
- 기타 부정행위 : 행위일로부터 1년간 응시제한

- 문제(지)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여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, 강의 등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응시자 및 관련자는 법률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

#### 나. 규정위반으로 인한 무효처리

- 규정위반이란 상기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이외에 시험 진행에 있어 공정한 평가 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, 규정위반의 유형 및 처리는 다음과 같음
- 해당 시험 무효처리
  - 규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사진이 심하게 손상되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
  - 휴대폰 등의 통신전자기기를 종료하지 않아 시험도중 작동으로 벨이 울리거나 진동이 발생한 경우
  -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진행에 심각한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

#### 다. 그 외 무효처리 및 0점 처리

- 감독자 또는 관리자 확인이 없는 OMR 답안지 : 무효처리
- 회사,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마킹 오류·누락 : 무효처리
- 시험지 유형의 마킹 오류·누락 : 0점 처리

### 4. 채점 및 합격자 발표

#### 가. 채점

- 협회 해당지역 본·지부에서 OMR 답안지 Reading
- 본부는 지역별 OMR 답안지 Reading이 종료된 후 채점처리

## 나. 합격자 발표

- 시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
- 협회는 합격자 명단을 전산자료로 회사에 통지
- 자격취득일 : 합격자 발표일

## 다. 시험결과 조회

- 협회 홈페이지 내 자격시험 조회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합격여부/합격일/자격번호/점수 조회 가능

## 라. 답안지 등의 관리 및 파기

- 본사 및 지역 본·지부 업무처리자는 자격시험 시험지·답안지 관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준수해야 함
- 채점이 끝난 답안지는 각 회차별 첫 시험실시일로부터 6개월간 본사 및 해당지역 본·지부에서 보관 후 파기
- 시험지는 각 회차별 첫 시험실시일로부터 6개월간 본사 및 해당지역 본·지부에서 보관 후 파기
- 시험감독용 응시신청자 명단 및 임직원 재직증명서는 각 회차별 첫 시험실시일로부터 6개월간 본사 및 해당지역 본·지부에서 보관 후 파기
- 시험합격자 등의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요청서는 본사 및 해당 지역 본·지부에서 1년간 보관 후 파기

## 5. 자격 관리

### 가. 합격확인서 발급

-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즉시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

## 합격확인서 발급 가능

### 나. 성적처리 및 비공개 원칙

-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처리
-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, 정답 및 오답개수, 본인 답안, 시험문제는 비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함

### 다. 관리자료 제출

- 합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협회는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## 6. 수수료 및 응시신청취소

### 가. 응시신청수수료 : 응시신청인원\* 1인당 40,000원

\* 응시신청인원 : 생명보험회사에서 협회 전산망으로 신청한 인원

### 나. 자격관리수수료 : 이 규정 시행당시 보험연수원 또는 회사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위탁보험사로부터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부여받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자격관리 신청시 신청인원 1인당 2,000원

### 다. 납부기일 및 납부처 : 각 회사는 자사소속의 응시신청자에 대한 응시신청수수료 또는 변액보험모집을 위탁 받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자격관리 신청수수료를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보험회사 명의로 본사에서 협회로 일괄 납부함

### 라. 응시신청취소

- 각 회차별 첫 시험일 기준 5영업일 전까지
- 보험회사 담당자를 통해 협회로 일괄 취소 신청

- 취소마감일 이후 응시신청 취소 불가
- 수수료 환불 :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

## 7. 기타

- CBT방식으로 실시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에 관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.

8. 시행일 : 2021. 3. 1.(시행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)



(별표1)

## CBT방식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세부기준

### 1. 응시신청

#### 가. 응시신청일

- 시험공고시 지정한 날

#### 나. 응시자격

- 보험업법 제83조(모집할 수 있는 자)에 규정된 모집종사자 중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 보험종목의 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자로서,
  - 생명보험회사의 임·직원의 경우 응시신청일 현재 해당회사에 재직 중인 자
  - 응시신청일 현재 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신고된 설계사, 대리점(유자격자 및 설계사) 및 보험중개사

#### 다. 응시신청 및 제출서류

##### 1) 응시신청방법

- 응시희망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응시신청
- 시험지역/시험장/시험시간 등의 변경은 불가하며, 접수기간 내에 한하여 접수취소 후 재접수

##### 2) 제출서류

-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 : 재직증명서(규정 별지 제1호 서식)
- 협회 또는 금감원에 등록·신고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: 협회 전산명부로 같음

## 2. 시험실시

가. 시험일시 : 협회가 별도로 정함

나. 시험장소 : 협회에서 지정한 CBT 시험장

다. 시험시간 : 60분

라. 시험장 관리

- 시험시작 10분전 입실완료

- 시험시작 후 입장불가

- 신분증 미지참자 시험응시 불가

- \* 신분증 : 주민등록증(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), 운전면허증, 기간 만료전의 여권, 청소년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국가기술자격증, 장애인복지카드, 기타 국가에서 신분을 확인해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

- \*\* 사진이 심하게 손상되어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

- 협회는 협회 직원을 시험감독자로 임명하고, 1인 이상의 시험관리자를 별도로 지정

마. 시험문제의 출제

- 시험문제 출제범위

- 변액보험 교재 및 모집종사자의 직업윤리, 경제·일반상식 등

- 시험문제 문항 및 형태

- 시험문제 문항수 : 40문항

- 문제형태 : 진위형(O,X), 사지선택형

바. CBT 시험의 시스템 결함시 처리방법

- 시험 당일 또는 시험 이전에 예상치 못한 시스템 상의 오류나 시험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, 지면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응시수수료의 전액 환불 또는 시험 연기 등의 처리로 보상함

### 3. 부정행위 등

#### 가.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등

-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: 행위일로부터 2년간 자격제한
  - 시험대리행위자
    - ▶ 변액보험 판매자격 기취득자 : 판매자격취소 및 2년간 응시제한
    - ▶ 변액보험 판매자격 미취득자 : 2년간 응시제한
  - 응시신청자 : 2년간 응시제한
- 문제를 메모하거나 통신기기 등으로 촬영하여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 : 행위일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
-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: 행위일로부터 1년간 응시제한
- 시험 중 타인의 답을 보거나, 자신의 답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: 행위일로부터 1년간 응시제한
- 기타 부정행위 : 행위일로부터 1년간 응시제한
- 문제(지)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여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, 강의 등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응시자 및 관련자는 법률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

#### 나. 규정위반으로 인한 무효처리

- 규정위반이란 상기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이외에 시험 진행에 있어 공정한 평가 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, 규정위반의 유형 및 처리는 다음과 같음
- 해당 시험 무효처리
  - 규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
  - 휴대폰 등의 통신전자기기를 종료하지 않아 시험도중 작동으로 벨이 울리거나 진동이 발생한 경우
  -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진행에 심각한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

#### 4. 합격자 발표

##### 가. 합격자 발표

- 시험일 당일. 다만, 지면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당일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일의 익일
- 자격취득일 : 합격자 발표일

##### 나. 시험결과 조회

- 협회 홈페이지 내 자격시험 조회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합격여부/합격일/자격번호/점수 조회 가능

#### 5. 자격관리

##### 가. 합격확인서 발급

- 합격자는 합격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합격확인서 발급 가능

나. 성적처리 및 비공개 원칙

-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처리
-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, 정답 및 오답개수, 본인 답안, 시험문제는 비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함

6. 수수료 및 응시신청취소

가. 응시신청수수료 : 응시신청인원 1인당 40,000원

나. 취소 및 환불

- 접수 기간 내 취소 : 100% 환불
- 별도의 취소 가능기간이 명기된 경우 : 취소가능기간 내 100% 환불
- 취소기간 이후 취소불가
- 취소방법 : 협회 자격시험홈페이지에서 응시신청자가 직접 취소
- 수수료 환불 :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

(별지 제1호 서식)

##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응시신청 전산양식

성명	주민 번호	점포 코드	점포명	종사자 코드	전화번호

※ 주민번호는 반드시 '-'을 포함하여 작성

※ 종사자코드는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

- A:임직원, B:설계사, C:일반대리점유자격자, D:일반대리점사용인,  
E:금융대리점유자격자, F:금융대리점사용인, G:보험중개사

(별지 제2호 서식)

##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감독결과 보고서

시험일자	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
시험장소	지역		시험장	
관리인	소속기관	직위	성명	확인
감독자				

			시 험 실 시 현 황				
구 분			1교시	2교시	3교시	4교시	
시험시간							
응시신청			명	명	명	명	
응시			명	명	명	명	
결시			명	명	명	명	
부 정 행 위	무 효	인원	명	명	명	명	
		사유 및 수험 번호					
	부 정	인원	명	명	명	명	
		사유 및 수험 번호					
	대 리	인원	명	명	명	명	
		사유 및 수험 번호					
	계		명	명	명	명	
	폐기답안지			매	매	매	매
				계 :			
총 계			응시신청	명	결 시	명	
			응 시	명	무 효	명	